

법령어의 애매성과 번역가의 해석문제: 대한민국법령의 ‘등’, ‘및’, 가운뎃점(·)을 중심으로

유 정 주
(이화여대)

1. 서론

법은 자의적 해석의 가능성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정확하고 명료한 언어로 작성되는 것이 원칙이다. 법률 언어는 사람들의 행위를 규율 하는 규칙을 기술하거나 형성한다는 점에서 고도의 정확성이 요구되며, 이러한 법적 구속력으로 인해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해당 규칙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Hjort-Pedersen & Faber 2001: 380). 법률텍스트 중에서도 제정법(statutes)은 한 국가의 전체 국민에게 구속력을 미치며, 특히 대륙법 체계를 따르고 있는 한국의 경우 성문법을 법원(法源)으로 하고 있으므로 일반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수월하게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법률텍스트의 정확성’에 대한 사회적 통념과는 대조적으로 사법작용에 있어 상위명제에 해당하는 법규범은 일반적인 추상적인 용어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 때문에 추상적이고 모호한 의미를 구체화하고 해석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된다. 법률 해석(interpretation)이란 법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규범의 의미와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법의 목적에 따라 규범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법률전문가인 법관의 고유영역으로 한정되어 있다(국회 법제실 2011: 28). 이에 따라 법률번역은 ‘해석은 법관이 한다’는 기본원칙 하에, 법률언어의 특수성을 최대한 고려하고 단어 하나하나에 부여된 법적 의미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원문을 그대로 번역문으로 변환(transcoding)하는 개념으로 인식되어 왔다(Šarčević 1997: 12).

따라서 실제 법률번역 과정에서 번역가가 해석자(interpreter)의 역할을 겸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법문의 구체적인 적용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가들의 해석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즉, 번역가의 법문 해석이 목표언어에서 가장 근접한 언어적 등가를 결정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어의적 차원에 한정되는 반면, 법관의 법문해석은 이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언어적 분석결과를 적용하고, 법의 규칙과 원칙에 부합하여 결정을 내리기 위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Varó & Hughes 2002: 24).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원칙일 뿐, 실제로는 법률가의 해석 작업과 번역가의 해석 작업 간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 빈번하게 벌어진다. 특히, 모호하고 일반적인 언어 사용을 특징으로 하는 대륙법계의 한국법을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표현을 선호하는 영미법계 스타일로 번역해야 하는 한국의 법령 번역가들의 경우 번역가의 해석범위를 넘어서는 해석을 내리지 않으면 번역을 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실적인 이유들로 인해, 잉베르크(Engberg 2002: 376)는 목표 텍스트를 제작하기 위해 원천 텍스트에 놓여있는 서로 다른 가능한 법적 해석들에 대해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점에서, 법률번역가의 작업이 법률전문가의 해석 작업과 유사한 특징을 갖는다고 보았다.

본고에서는 한국의 법률번역가들이 부딪히는 이와 같은 해석에 관한 문제의 사례로 대한민국 법령의 ‘등’, ‘및’, 가운뎃점(·)의 번역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등’, ‘및’, 가운뎃점(·)은 대한민국의 모든 법령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관용적 단어 및 문장부호로서, 주로 법령문을 간결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이들은 한국 법체계에 구속되는 법적 맥락(legal context)에 따라 사용되기 때문에, 번역가가 이를 해석하지 않고 일상적 맥락에 따라 ‘등’을

‘etc.’로, ‘및’을 ‘and’로, 가운데띄임을 ‘and’로 번역하다 보면 목표언어 관습에 맞지 않은 영어표현이나 오역으로 이어지기 쉽다. 그러나 번역가들은 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해석의 필요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필요성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자의적 해석에 따른 오역의 가능성을 염려하여 해석을 꺼린 나머지 결과적으로 오역을 만들어 내는 경우가 많다. 이에 본고에서는 대한민국 법령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등’, ‘및’, 가운데띄임(·)을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번역가가 맞닥뜨리게 되는 해석의 문제들을 고찰하고, 법제과정에서 이러한 애매한 법령어의 사용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법률언어의 모호성과 애매성

일반적으로 법률문서는 그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용어와 문장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권오봉 외(2009: 3)는 동일한 단어나 문장이 여러 의미로 해석되는 것을 ‘모호(ambiguity)’라고 정의하면서, 이는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의 명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법률언어로는 적합하지 않은 문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률해석에서 ‘모호성’과 ‘애매성’이란 용어는 사실 엄밀히 구분되는 개념이다. 법률 해석에 있어 법적 비결정성(legal indeterminacy)의 원인이 되는 모호성(vagueness)은 법의 적용 경계(borderline)에 관한 것으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분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정보를 알고 있음에도 특정 단어를 적용해야 할지의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뜻한다(Sainsbury 1995: 24). 반면, 애매성(ambiguity)은 주로 다의성과 관련된 개념으로 하나의 단어, 구, 문장이 한 가지 이상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며, 크게 어휘적 애매성과 구조적 애매성으로 나뉠 수 있다(Endicott 2000: 54). 카오(Cao 2007: 70)는 법률번역가가 다루는 해석의 문제를 언어적 차원으로 한정하면서 모호성, 애매성, 일반성과 같은 법률언어의 비결정적 특성을 ‘불확실성(linguistic uncertainty)’으로 통칭하고, 이를 다시 어휘적 불확실성, 구문적, 문법적 불확실성, 오류 또는 변이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세분하였다. 반면

바로와 휴즈(Varó & Hughes 2002: 24-46)는 모호성을 어휘적 차원과, 애매성을 구문적 차원과 연결 짓고, 어휘적 모호성을 다시 일곱 가지로 세분화한 뒤 은유적 언어사용을 추가했다. 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학자들에 따라 사용하는 용어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법문의 구체적 적용 문제와 관련된 모호성의 문제는 법 이론에서 법학자들이 다루어야 할 문제인 반면, 법률번역과 연관된 해석의 문제는 주로 어의적 문제에 관한 애매성의 차원에 해당한다(Varó & Hughes 2002: 26). 엔디콧(Endicott 2000: 54)은 ‘애매한 표현’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불확실성(uncertainties)의 문제는 일반적으로 화자가 의도한 바를 밝혀내는 것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고 보았는데, 법률언어의 비결정성 문제와 관련된 번역가의 ‘해석(interpretation)’¹⁾이란 통상 이렇게 법제관이 의도한 바를 밝혀내는 과정을 일컫는다.

<표 1> 모호성(vagueness)와 애매성(ambiguity)의 구분

Endicott (2000)	모호성
	애매성 1. 어휘적 애매성 2. 구조적 애매성
Cao (2007)	(언어적) 불확실성 1. 어휘적 불확실성 2. 구문적, 문법적 불확실성 2. 오류 또는 변이로 인한 불확실성

1) 바로와 휴즈(2002: 27)는 법률 해석의 차원을 크게 관념적(ideological)인 차원과 언어적 차원의 두 가지로 구분하고, 전자의 해석이 용어의 의미를 해명하거나 설명하는 ‘interpretation’인데 반해, 후자의 해석은 애매, 모호, 또는 비결정적인 단어나 표현에 ‘특정 의미를 부여’하는 ‘construction’이라고 하면서 언어적 차원의 법률해석을 법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해석(interpretation)과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용어가 한국에서 모두 ‘해석’으로 번역되고 있고, 본고에서 논의할 번역가의 법문 해석이 언어적 차원의 경계를 넘어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둘을 엄밀히 구분하지 않고 해석(interpretation)이란 용어로 포괄하여 사용하였다.

Varó & Hughes (2002)	(어휘적) 모호성
	1. 정의, 외연(extension), 내연(intension) 2. 지시(denotation), 내포(connotation), 어역(register) 3. 다의성(polysemy) 4. 동음이의어(homonymy) 5. 동의어, 동철다음다의어(hyperonym), 하의어(hyponym) 6. 반의어(antonym) 7. 잘못된 동족어(cognate)
	(구문적) 애매성
	은유적 언어

이러한 애매성은 법제관의 방임이나 법조계 내부의 언어사용 관행에서 빚어지기도 하지만, 정치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합의의 산물’일 수도 있기 때문에 번역시 주의가 요구된다(Sarčević 1997: 92). 법률가가 번역가의 역할을 겸하지 않는 한, 번역가는 법률텍스트에 나타난 애매하거나 모호한 표현이 전략적 결과물인지, 우연의 산물인지를 판단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중립적(unbiased)’으로 번역하도록 요구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칼리엔도(Caliendo 2007)는 이러한 모호성과 애매성을 법률언어의 핵심 특성 중 하나로 지적하면서, 법률텍스트에서 이러한 전략적 모호성을 어느 한 방향으로 해석하지 않고 중립적으로 놓아둔 채 번역해야 하는 번역가의 고충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번역과정에서 법률번역가는 전략적인 모호성이든, 텍스트 이상으로 인한 모호성이든 이를 어떤 식으로든 해석해내지 않으면 번역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²⁾. 또한 ‘중립적’ 해결방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2) 일례로 법조계에서 해석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형법 제170조제2항의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에 대한 영문번역을 들 수 있다. 현재 한국법제연구원 영문법령 홈페이지에 올라와있는 공식 영문 번역은 ‘an object mentioned in Article 166 or 167 which is his own property’인데, 이는 번역가가 법리에 맞는 해석인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이 아니라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의 물건 또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으로 해석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번역가가 이에 관한 두 가지 해석을 모두 염두에 두었다 할지라도 이를 ‘중립적으로’ 번역할 수 있는

를 각각의 경우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사실 법령문을 비롯한 한국의 법률텍스트에서 나타나는 애매성의 문제는 의도적인 합의의 산물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국립국어연구원이 수행한 법조문의 문장실태조사(2001)와 한국 법령문의 국어학적 검토(2002)를 통해서도 지적된 바 있다. 국립국어연구원(2001: 113)은 하나의 문장이 둘 이상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성질을 ‘중의성’ 또는 ‘애매성(ambiguity)’으로 정의하고, 법조문이 중의적인 문장으로 되어 있으면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국민생활을 불편하게 하므로 문장 다듬기를 철저히 하여 문장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본고에서 살펴볼 ‘등’, ‘및’, 가운데뎨점(·)의 사용으로 인한 애매성에 관해 국립국어연구원(2002)은 <표 2>와 같이 지적하였다.

<표 2> ‘등’, ‘및’, 가운데뎨점(·)과 관련한 국립국어연구원 지적 내용

‘등’의 남용(p. 79-81)	‘및’의 남용(p. 81-83)	불필요한 가운데뎨점 사용(p.8-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문에서 조문이 너무 길어지는 단점을 막고자 약칭을 하는데, 법령 안에 내부적 약속이 있을 때는 ‘등’의 남용이라 할 수 없음. • 그러나 법령문에서 아무런 약칭 약속 없이 한 항목만 제시하고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나머지 항목을 짐작하기 힘든 경우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및’은 ‘와/과’에 비해 앞의 말과 띄어쓰기 때문에 문장연결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고 자주 끊기는 느낌을 줌. • ‘가운데뎨점(·)’, ‘쉽표(,)’ 등이 문장부호와 함께 출현할 경우 문장 성분들의 결속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운데뎨점은 반복되는 말을 생략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법령문에서 가운데뎨점을 남용하면 반복되는 부분을 생략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더 이해하기 어려워지거나 부자연스러워지는 경우가 많음.

법률문장의 자의적 해석을 일으킬 수 있는 한국 법률텍스트의 모호성과 애매성과 관련하여 텍스트 언어학자들 역시 비슷한 지적을 했다. 김광해(2000)는 텍스트 언어학의 여러 개념들을 적용해 한국의 판결문들을 분석한 논문에서 미

방법이 달리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해석상의 선택을 해야 한다.

로 같은 판결문에 대한 ‘해독’의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판결문들이 정확한 의미 파악이 힘든 이유가 법리의 전문성이나 내용이 고답적이어서가 아니라 국어문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텍스트성의 완성도가 미진하기 때문이라고 결론짓는다. 장소원(2009) 역시 법률텍스트 문장의 문법성을 다룬 논문에서 한국의 법조문에서 간결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사생략, 주어나 목적어의 부재, 문장성분의 생략 등이 문장전체의 의미를 모호하게 만들고 분명한 정보의 전달을 방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았다.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텍스트 언어학자들이 지적한 한국 법률텍스트의 문제점

한국 판결문 텍스트의 문제 (김광해, 2002)	한국 법률텍스트의 문제 (장소원,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법 형태소 사용 이상 • 문장 성분의 배열방식 이상 • 문장 구성 방식 이상 • 정보 표지 이상 • 어휘적 결속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해하거나 독자적인 어휘사용 • 필요한 조사의 생략 • 기형적 장문성 • 명사형 어미의 과다 사용 • 문장구조의 불완전성 • 문장성분간 호응의 불일치 • 수식·피수식 구조의 모호함

법률해석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이러한 텍스트차원의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2002년 이래 한국법제연구원과 법제처의 주도로 헌법, 형법, 민법 등 주요 법령에 대한 용어와 문장의 순화방안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는 일본식 표현과 한자어의 순화, 길고 복잡한 문장의 분절, 비문법적 문장의 개선 등이 상당부분 이루어진 상황이다(법제처 2009). 그러나 ‘등’, ‘및’, 가운뎃점(·)과 같은 애매한 법령어의 무분별한 사용을 비롯한 법령문의 텍스트 차원의 문제들은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2.2. 맥락을 통한 법령어의 해석

법학자인 이상돈은 한국 법률 특유의 이러한 불명확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도 결국 한국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면서, 유럽어에 비해 구체적 사안의 맥락에 민감한 한국어의 맥락주의(Kontextualismus)적 특성을 지목했다(한국법제연구원 2002: 36-73). 즉, 주어가 생략되거나 조사나 접속사 등 논리적 관계설정기능이 없는 한국어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이 한국어기호가 사용되는 구체적 상황에 대한 섬세한 인지를 바탕으로 그 기호의 의미를 공유할 줄 아는 언어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렇게 동일한 규칙이나 원칙의 해석에 있어 당사자들 간 상충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들의 주장이 근거하고 있는 구체적인 상황 맥락을 먼저 고려하는 것은 영미 법학계에서도 보편화된 접근방식이다. 법령 텍스트의 직접 수신자인 법률가들의 경우 수많은 법문이 적용되고 해석되는 방식에 대해 익숙해져 있으며, 판례나 평석, 법제 자료 등 법령 텍스트 외의 보조 텍스트를 참조할 수 있으므로 맥락을 통한 해결방식의 제안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맥락을 통한 법문 해석 방식을 번역가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전제가 요구된다. 자르체비치(Sarčević 1997: 67-68)에 따르면 법률텍스트의 의미결정을 위해 작동하는 맥락의 층위에는 문화적 맥락인 지역 맥락, 법체계에 구속된 법적 맥락, 해당 텍스트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령 맥락, 텍스트가 생산된 사회적 맥락 등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맥락은 모두 해당 법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이 없이는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즉, 맥락을 통한 법령어 해석을 위해서는 한국 법령문 특유의 애매성이 표출된 발화맥락에 대한 장기간의 노출경험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법문에서 ‘발화 맥락의 인지’란 결국 ‘해당 법문의 구체적인 언어사용 규칙에 대한 인지’에 다름 아닌데, 이러한 언어사용 규칙을 인지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법문이 작성되고 해석되는 방식에 대해 충분히 익숙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바로와 휴즈(2002: 37)는 법률언어의 어휘적 애매성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맥락³⁾을 제시하면서, 법률번역가들에게

3) 주진국(2009: 247)은 법률서식 한영번역을 다룬 논문에서 맥락(context)이라는 술어가 갖는 의미가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바로와 휴즈의 경우 ‘특정 발화를 내포하는 환경의 다양한 층위’를 맥락이라 정의하는 반면, 윌리엄스와 체스터만(Williams and Chesterman, 정연일 역: 110)은 ‘번역물과 의미있게 관련된 시공간적 환경의 모든 것’을 번역맥락(translation context)으로 정의하였다.

가능한 해석 방안으로 아래 2에 제시된 코텍스트(co-text)를 통한 해결을 강조한다.

1. 의사소통이 발생하는 물리적, 시간적 환경으로서의 '발화 맥락'
2. 동일 텍스트 내에서 해당 발화에 선행 또는 후행하는 단어나 문장들, 즉 '코텍스트'
3. 특정 사회의 습관, 기대, 관습 등으로 구성된 언어 외적 환경

즉, 1과 3에 제시된 맥락을 통한 해결은 한국 법문의 구성방식과 언어사용에 익숙한 법조인들이나 오랜 경력을 갖춘 번역가들에게만 가능한 해결방안이며, 대부분의 번역가들은 해당 발화 앞·뒤의 단어나 문장들, 즉 코텍스트를 활용하여 법문을 해석하게 된다. 이렇게 코텍스트를 통한 해석이 가능하려면 애매한 어휘나 문장구조의 의미가 함께 공기하는 언어(collocation) 또는 맥락상의 단서(clues)를 통해 드러나거나, 그 양상이 여러 법령문에서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법령어를 구성하는 많은 어휘 단위들의 경우 번역가가 충분히 맥락을 인지할 수 있을 만큼 패턴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지도, 맥락상의 단서와 함께 제공되고 있지도 않은 경우가 많다. 동일한 내용이 특정 법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또 다른 법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표기되어 있는 현 상황은, 한국의 법령문에 만연된 애매한 법령어 사용이 법률언어의 유연한 개념화에 기인한다기보다는 개별 법제관의 개인적인 선호도나 글쓰기 작성 스타일에 따라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암시한다. 애매한 법령어의 번역규범 수립을 위해 체계적인 법제 차원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3. '등', '및', 가운뎃점(·)의 해석 문제

3.1. 연구방법

본고에서는 번역가의 해석 문제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로, 한국법제연구원이 2012년 상반기에 신규 영역한 석면안전관리법(법률 제10613호)에 나타난

‘등’, ‘및’, 가운데점(·)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최근에 신규 번역된 법을 선택한 것은 법률번역을 단순한 언어 간 변환 작업으로 간주하던 과거에 비해, 최근의 법률번역가들이 법령의 맥락을 해석하는데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다양한 사례 추출이 보다 용이할 것이라는 연구자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본고의 분석대상인 석면안전관리법을 번역한 한국 법제연구원 소속 재택 번역사는 한국의 법대를 졸업한 후 미국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전문법학석사(Juris Doctor)과정을 수료하고 법률번역가로 7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번역가로서, 번역가인 동시에 법률전문가이기 때문에 일반 번역가들보다 법문의 맥락을 보다 적극적으로 정확하게 해석할 것으로 예상했다.

구체적으로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통상적인 의미와 대한민국 법령에서의 의미를 각각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과 국회법제실에서 발간한 법제실무지침서, 법제처에서 발간한 법령정비기준 등을 활용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석면안전관리법의 영문번역본에서 ‘등’, ‘및’, 가운데점(·)의 번역양상을 각각 유형화한 후 이를 그래프로 정리하고, 맥락을 통한 번역가의 해석 과정과 그와 관련된 문제점을 분석했다. ‘등’, ‘및’, 가운데점(·)은 대한민국의 모든 법령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요소이므로 어떠한 국문 법령을 선택하는지는 유의미한 변수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법령의 내용보다는 ‘등’이 일반적으로 번역가들이 생각하는 ‘etc.’ 외에 어떻게 해석되어 번역될 수 있는지를 다양하게 보여주는 번역사례와 ‘및’이 ‘and’ 외에 ‘or’로 번역되는 경우, 가운데점(·)이 ‘and’ 외에 ‘or’로 번역되는 경우를 보여주는 사례들을 위주로 추출하고자 했다.

3.2. ‘등’의 문제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1999)에 따른 ‘등’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등(等) 「의존명사」**1**₁((명사나 어미 ‘-는’ 뒤에 쓰여)) 그 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말.**2**₂((명사 뒤에 쓰여)) 두 개 이상의 대상을 열거함을 나타내거나 열거한 대상을 한정함을 나타내는 말.

국회 법제실(2011: 604)에 따르면 ‘등’은 특수한 법문표현 중 하나로, 정의된 용어의 사용과 함께 약칭으로 분류된다. 약칭이란 빈번하게 사용되는 문구

또는 단어를 줄여 대표할 수 있는 문구 또는 단어로 표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국회법제실은 약칭을 사용할 경우 입법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으나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법률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사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그 예로 ‘A, B, C…’로 열거된 것을 ‘A 등’이라고 약칭할 경우 앞의 조문을 읽지 아니한 자는 이를 ‘예시’로 받아들이거나 B, C 등은 규율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A·B·C…’를 약칭할 경우에는 ‘A’로 약칭하는 것을 피하고, ‘A·B·C…’의 공통요소를 모아 새로운 용어로 약칭할 수 있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A 등’으로 약칭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국회 법제실에서 규정한 법문에서의 ‘등’의 의미는 한국어의 일반적인 ‘등’의 의미인 ‘열거, 나열의 축약’과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주의할 사항은 법문에서 사용되는 ‘등’이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기 쉬운 ‘예시’의 의미가 아니라는 점이며, ‘등’이 약칭하는 내용 또한 분명한 규율대상에 들어간다는 점이다. 따라서 ‘등’ 번역에 ‘such as’나 ‘for example’ 같은 예시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실제로 대한민국법령을 영역하는 책임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에서는 현재 ‘등’의 법문상의 의미를 축약과 예시 두 가지를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근거한 번역지침에 따라 축약(약칭) 표현인 ‘etc.’와 예시의 표현인 ‘such as’와 ‘including’의 사용을 모두 허용하는 입장이다.⁴⁾ 동 기관에 채택 번역사로 소속되어 있는 연구자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번역지침이 법문상의 ‘등’의 의미를 축약과 예시로 엄밀히 구분하여 내려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번역가들 역시 모든 경우 ‘등’의 의미를 두 가지로 구분하여 번역을 하고 있지는 않다고 판단된다. 오히려 ‘etc.’ 외에 ‘such as’나 ‘including’의 사용을 허용한 것은 영미법에서 유사한 맥락의 약칭으로 사용되는 ‘etc.’와 ‘including, but

4) 한국법제연구원 법령영역센터 상근, 채택 번역사용 번역작업지침(2012년 3월 19일자)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법체계의 상이함으로 인해 미국법에서 사용되는 ‘etc.’가 한국법에서 사용되는 ‘etc.’와 기능이 같다고 보기 어렵다고 규정하면서 ‘등’에 대한 번역지침을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다.

등: (다수의 법령 용어를 축약하여 표현하는 경우) _____, etc.

등: (예시를 위해 단어를 나열하는 경우)

1) _____, such as A, B, and C

2) _____, including A, B, and C (,); such as A, B and C

not limited to'가 주로 명사와 같이 붙어서 사용되는데 비해, 한국의 법문에서는 '등'이 명사, 동사, 형용사 등 여러 가지 문장 구성성분들과 함께 사용되기 때문에 'etc.'로 번역표현을 제한할 경우 산출된 번역문이 목표언어인 영어의 언어 사용규범에 비추어 볼 때 어색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실적 이유를 반영한 결정으로 생각된다.⁵⁾ 또한 번역지침과 상관없이 다수의 번역가들이 '등'을 'etc.'나 'such as', 'including' 외에도 법문을 직접 해석하여 그 내용을 번역하거나, 아예 번역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도, 명사 외에 동사, 형용사 등에 '등'이 붙어있을 경우 이를 영어의 사용관습에 따라 자연스럽게 번역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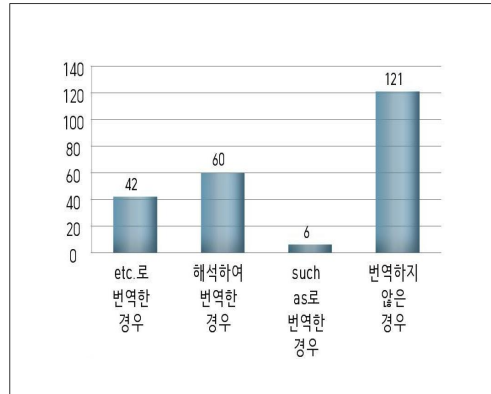
3.2.1. 사례분석

본고의 분석대상인 석면안전관리법(법률 제10613호)의 영문 번역텍스트에서도 <그림 1>와 같이 '등'을 'etc.'로 번역한 경우, 해석하여 번역한 경우, 'such as'로 번역한 경우, 아예 번역하지 않은 경우 등 다양한 번역양상이 발견되었다.

5) 법제연구원 번역지침에서 현재 '등'의 번역 표현을 엄격하게 제한하지 않은 이유로는 한국어의 문장구조와 영어의 문장구조상 차이점으로 인해, '등'을 'etc.'로만 번역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국의 법문에서 자주 등장하는 '경우 등'의 표현 역시 영어로 번역할 때 'etc.'로 번역하기 어려운 사례에 속한다. 그러나 국회법제실이 명시한 바와 같이 '등'이 약칭하는 내용 또한 분명한 규율대상에 들어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명백한 예시 표현인 'such as'의 사용은 번역에서 가급적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례) 제18조에 따라 고시된 도로명주소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과 해당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Where insignificant matter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cases that do not involve the modification of road name addresses publicized under Article 18, are intended for modification, collection of the opinions of residents of the relevant areas and deliberation by the relevant road name address committee may be omitted.

<그림 1> 석면안전관리법 영문번역텍스트에서 ‘등’의 번역 양상



<그림 1>에서와 같이 분석대상 자료에서는 ‘등’이 법제연구원 번역지침인 ‘etc.’나 ‘such as’로 번역된 경우보다 번역가가 해당내용을 해석하여 번역하거나 아예 번역하지 않은 경우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etc.’나 ‘such as’로 번역할 경우 영어의 문장구조 관습에 맞지 않거나 영미법의 장르규범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번역가의 판단이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사례를 살펴보자.

(사례 1)

제18조(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등) ① 개발사업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석면 비산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이하 “석면비산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Article 18 (Installation, etc. of Facilities for Preventing Asbestos from being Scattered)

(1) When a developer executes a development project, he/she shall install facilities for controlling scattered asbestos (hereinafter referred to as “facilities for preventing asbestos from being scattered”) and take other necessary measures.

제목의 ‘등’은 시설의 설치를 규정한 제(1)항 외에도 제(2), (3), (4)항에서 승인

기관의 조치, 개선, 사용중지 명령 등 다른 내용들을 약칭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며, (1)항의 조문에 사용된 ‘등’ 역시 시설의 설치 외에 기타 개발사업자의 의무사항들을 약칭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두 경우 모두 예시를 위한 나열로 사용된 ‘등’이 아니라 다수의 법령용어를 축약하기 위해 사용한 ‘등’으로 그 용법상 차이가 없는데도, 번역가는 제목에서는 이를 ‘etc.’로 번역하고, 조문에서는 ‘take other necessary measures’로 해석하여 번역하였다. 이는 조문의 경우 제목과 달리 ‘등’이 ‘설치하는’이라는 동사에 붙어있어 이를 ‘etc.’로 번역할 경우 ‘install, etc. facilities~’가 되거나 ‘~scattered asbestos, etc.’로 번역되는 현상을 피하기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 ‘install, etc. facilities~’로 번역할 경우 etc.를 주로 명사형 뒤에 붙여 사용하는 영어의 사용관습에 맞지 않고⁶⁾, ‘~scattered asbestos, etc.’로 번역할 경우 ‘석면비산 등’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번역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에 개입한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사례 2)

“개발사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승인·허가·면허 등(신고에 대한 수리를 포함하며, 이하 “승인 등”이라 한다)을 받아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으로서 석면이 비산(飛散)되거나 비산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말한다

The term "development proje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projects that is executed with approval, permission, license, or a similar disposition by the central government or a local government (including the acceptance of a repor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pproval, etc.") and that i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as one in which asbestos is scattered or is likely to be scattered.

사례 2(제2조제3호)에서 번역가는 ‘승인·허가·면허 등’을 ‘approval,

6) 물론 “Employment of Minor to Sell, etc., Marijuana”의 경우처럼 미국 법에서 ‘etc.’가 동사와 결합되어 사용된 경우도 발견되지만 그 수는 ‘etc.’가 명사형과 결합되어 사용되는 수와 비교하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http://www.justia.com/criminal/docs/calcrim/2300/2392.html>)

permission, license, etc.’로 번역하는 대신 승인, 허가, 면허를 국가 또는 지방단체의 ‘처분’의 하나로 보아 이때의 ‘등’이 비슷한 유형의 처분을 의미할 것으로 법문을 해석하여 ‘similar disposition’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그림 1>을 통해 추론할 수 있듯이, 상기 번역가는 ‘etc.’라는 정례화된 표현을 사용하는 것보다 이를 해석하여 번역하거나 아예 번역하지 않는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etc.’를 사용하여 번역할 경우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표현을 선호하는 영미법의 텍스트규범과 배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번역문에서 가급적 ‘etc.’의 사용을 줄이려는 번역가의 노력의 일환으로 판단된다. 위의 경우에 사용된 ‘similar disposition’은 승인·허가·면허가 일반적으로 국가기관의 행정행위(처분)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번역가의 해석이 과히 틀리지 않은 사례라고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다음의 사례 3에서와 같이 번역가가 잘못된 해석을 통해 번역함으로써 신뢰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경우도 발생 가능하다.

(사례 3)

제9조(자가 측정) ① 별표의 법령에 따라 석면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 신고 전까지, 제조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사용 또는 판매 개시 전까지 해당 석면 등의 석면 함유 여부를 스스로 확인·조사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이하 “석면조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확인·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Article 9 (Self-Measurement) (1) A person who intends to import, manufacture, or sell asbestos or a similar product shall check and examine it on his/her own or shall request an institution specializing in inspection of asbestos under the body of Article 38-2 (1)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sbestos inspection institution") to check and examine it to find whether the product contains asbestos before filing an import declaration, if he/she intends to import asbestos or a similar product in accordance with an Act or a subordinate statute specified in the Table attached hereto, or before the commencement of use or sales, if he/she intends to manufacture or sell such a product, and shall keep and preserve records of the results.

사례 3에서 번역가는 ‘석면 등’의 의미를 해석하여 ‘asbestos, etc.’로 번역하는

대신 ‘asbestos or a similar product’로 번역하고, 이후 ‘석면 등’을 한 번 더 번역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자 반복을 피하기 위해 이를 ‘the product’로 처리하였다. 그러나 제2조의 정의조항에서 석면은 제품이 아닌 ‘규산염 광물류’로 명백히 정의되어 있고, ‘석면함유제품’은 2호에서 따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석면 등’을 ‘asbestos or a similar product’로 처리하여 석면을 제품의 일종으로 해석하여 번역한 것은 잘못된 해석으로 인한 오역의 사례로 볼 수 있다. 상기 번역가가 법률전문가이기도 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례 3은 ‘등’과 같은 애매한 법령어를 해석하여 번역하는 작업이 법률전문가에게도 쉽지 않은 일임을 방증한다. 법문 전체의 맥락을 활용한 고도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법률전문가도 해석 상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법령어 해석 작업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사례 4)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국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Article 3 (Responsibilities of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1) The central government and each local government shall establish and enforce policies necessary for the safety management of asbestos in order to prevent injuries caused by asbestos to the environment and people's health.

사례 4에서 번역가는 ‘국가 등’을 ‘State, etc.’로 번역하지 않고, 제(1)항의 맥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가’를 지방자치단체와 대비되는 개념의 중앙정부로 해석하고,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축약한 것으로 해석하여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로 번역하였다. ‘국가’를 중앙정부로 해석하여 번역한

7) 제2조(정의)

1. “석면”(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硅酸鹽) 광물류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2. “석면함유제품”이란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으로서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면함유 가능물질을 가공·변형한 제품을 제외한 제품을 말한다.

것은, 국가의 개념을 사회(국민)의 구체적인 필요를 초월한 관념적·추상적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그 필요에 따라 만든 도구로서의 정부기구로 보는 현대적 국가관에 따른 해석으로(김남진, 2006), 상기 조문의 맥락상 과히 틀린 해석이라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서 ‘국가와 지방단체’를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로 번역하고 있고, ‘국가배상법’같이 ‘국가’가 들어간 법령 명 또한 ‘State Compensation Act’처럼 ‘State’로 번역하고 있는 상황에서, 번역가가 이를 해석하여 번역할 경우 법령용어의 일관성과 통일성 원칙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법률번역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가 용어 사용의 일관성임을 고려할 때, 번역가의 해석 부담을 줄이는 것은 통일성 있는 법률용어 사용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된다.

3.3. ‘및’의 문제

‘등’ 번역과 관련된 해석의 문제가 주로 영어-한국어의 언어사용 규범 차이로 인한 것이라면, ‘및’의 해석문제는 중의성으로 인해 발생한다.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1999)에서는 ‘및’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는데, 이를 보면 일반적인 한국어 사용 용례에서 ‘및’이란 ‘and’의 의미를 가질 뿐, 경우에 따라 ‘or’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및: ‘그리고’, ‘그 밖에’, ‘또’의 뜻으로 문장에서 같은 종류의 성분을 연결할 때 쓰는 말
(예: 원서 교부 및 접수/ 가정 및 지역사회)

한편, 국회 법제실(2011: 580)에 따르면 법령에서 자주 쓰이는 ‘또는’과 ‘및’의 사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또는’은 2개 이상의 사항을 나열할 때 사용하는 선택적 접속사로 ‘~나, ~이나, ~거나’로 사용할 수 있다. ‘및’은 2개 이상의 사항을 함께 필요로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병합적 접속사로 ‘와, 과’를 사용할 수 있다. 두 용어로 연결된 용어들은 앞말의 수식을 받는데, 마지막으로 연결되는 사항 앞에만 ‘및’ 또는 ‘또는’을 쓰고 그 앞에서는 중간점이나 쉼표를 쓴다. ‘~

나, 이나, 거나' 또는 '와, 과'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는 두 개의 사항만을 단순히 나열한 경우, '또는'이나 '및'을 사용하면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 '~나, 이나, 거나' 또는 '와, 과'를 사용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이해하기 쉬운 경우이다. 한편, '및'을 사용하여 용어를 연결하는 경우 연결된 용어가 모두 앞말의 수식을 받게 되므로 '및' 뒤에 오는 용어가 앞말의 수식을 받지 않아야 할 경우에는 이를 주의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상기 내용을 통해 볼 때 대한민국 법령에서 사용되는 '및'이 '또는'의 의미를 내포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및'을 '와, 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및'의 의미를 통상적인 의미의 'and'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법제처에서 발간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 제 3판에서도 법령용어순화의 관점에서 '및'을 '-와/-과'로 바꾸어 사용할 것을 권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있다.

'및'을 사용하면 나열된 두 항목이 앞 말의 수식을 동시에 받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어 이해나 표현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및'을 사용할 수 있다. (p. 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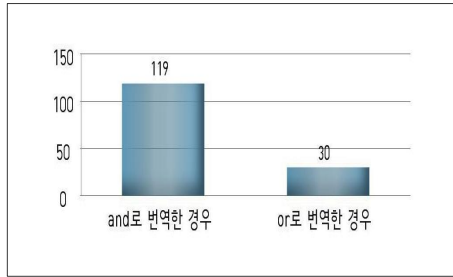
즉, 법제실무자들이 법제과정에서 '및'을 사용하는 경우는 일상적인 맥락에서 '와/과'를 사용해야 할 때 이를 법령문에서 관습화된 표현인 '및'으로 대신한 것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실제 이를 영문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번역가는 '및'을 'and'로 번역해야 할지, 'or'로 번역해야 할지, 또는 'and/or'로 번역해야 할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부딪히게 된다.

3.3.1. 사례분석

다음으로 '및' 번역과 관련된 번역가의 해석 문제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아래 <그림 2>는 분석대상인 석면안전관리법 영문번역텍스트에서 '및'이 'and'로 번역된 경우와 'or'로 번역된 경우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⁸⁾.

8) 'and'로 번역한 경우에는 'as well as'같이 'and'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들과, 제30조제

〈그림 2〉 석면안전관리법 영문번역텍스트에서 ‘및’의 번역 양상



이를 보면 ‘및’이 통상적 의미의 ‘and’로 번역된 경우가 훨씬 많긴 하지만 ‘or’로 번역된 사례 역시 무시할 만한 숫자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의 법문에서 사용되는 ‘및’이 ‘and’의 의미로 사용된 것인지, ‘or’의 의미로 사용된 것인지를 번역가가 맥락에 따라 해석하지 않으면 번역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사례 5)

② 개발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개발사업이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제1항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서나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에 석면비산방지계획서를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2) If a development project for which a developer files an application for the approval under paragraph (1) is a project subject to the prior examination of environmental nature or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under Article 25-2 (1) of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or Article 4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a plan for preventing asbestos from being scattered may be included in documents about the prior examination of environmental nature or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2항처럼 ‘등’과 함께 쓰여 문장구조상 ‘and’를 중복하여 사용하지 않았지만 명백히 ‘and’의 의미로 사용된 사례들을 포함시켰다.

사례 5(제17조제2항)를 보면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제1항에서는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제1항과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 모두에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사례 5에서의 ‘및’은 ‘and’가 아닌 ‘or’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번역가는 여기서 사용된 ‘및’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 해당 조문을 찾아 확인하지 않아도, 뒤의 ‘또는’이라는 단어를 통해 법제관이 의도한 바를 비교적 손쉽게 읽어낼 수 있다. 해석을 손쉽게 해주는 코텍스트 차원의 맥락 단서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다른 조문들까지 검토하지 않아도 해당 조문의 문맥을 통하여 ‘및’의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해석 기제들이 존재할 경우, 번역가는 해석에 대한 부담 없이 정확한 번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는 사례 5와 유사하지만 문장 내에 맥락상의 단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살펴보겠다.

(사례 6)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한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명령의 이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5) The owner of an asbestos building who has performed in accordance with an order issued pursuant to paragraph (3) or (4) shall report his/her performance of the order to the competent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the head of the competent Si/Gun/Gu,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he competent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the head of the competent Si/Gun/Gu shall, upon receiving the report, assign a competent public official to inspect the performance of the order without delay.

사례 6에서도 번역가는 사례 5와 마찬가지로 ‘및’이 ‘and’의 의미로 사용된 것인지 ‘or’의 의미로 사용된 것인지를 해석해내야 한다. 그러나 사례 5의 경우와 달리 (5)항의 문장 자체의 맥락만으로는 의미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번역가는 해당 (3)항과 (4)항의 내용을 통해 상기 명령이 (3)항과 (4)항에 공통적으로 규정된 명령인지, 아니면 각각 다른 명령인지를 해석해야 한다.

-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석면의 비산 등으로 인체에 미칠 위험이 우려된다고 인정하면 석면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석면 해체·제거, 그 밖에 석면 비산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건축물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번역가는 상기 (3)항과 (4)항의 규정이 각각 다른 종류의 명령(비산방지에 필요한 조치 명령,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고 있으므로 (5)항의 ‘및’은 ‘and’가 아닌 ‘or’로 번역되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or’로 해석하여 번역하였다. (5)항의 ‘및’을 번역하기 위해 같은 조의 (3)항과 (4)항의 문맥을 전부 읽어내야 했지만, 같은 조 내에서 비교적 손쉽게 문맥을 파악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한국 법문의 유형화된 맥락에 익숙해져 있는 번역가의 경우 그다지 어렵지 않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제 번역가가 해석해야 하는 법문의 맥락이 좀 더 복잡한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자.

(사례 7)

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및 건축물석면지도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이를 건축물 관계자 및 건축물 양수인에게 알려 주지 아니한 자

1. A person who fails to submit a report on the results of a building asbestos inspection or a building asbestos map in violation of Article 22 (1), who commits fraud in submitting such a report or map, or who fails to inform persons concerned of the building or a transferee of the building thereof

사례 7(제49조제2항제1호)의 경우 번역가는 첫 번째로 등장하는 ‘및’을 ‘and’로 번역할지, ‘or’로 번역할지 결정하기 위해 일단 제22조제1항의 조문 내용을 통해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및 지도를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지, 둘 중 하나만 제출해도 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제22조제1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건축물소유자는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건축물석면조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학교 등의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 제39조, 제40조 및 제49조제5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건축물(이하 “석면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건축자재의 위치, 면적 및 상태 등을 표시한 건축물석면지도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임차인·관리인 등 건축물관계자 및 건축물의 양수인에게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알려주어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경우 모든 건축물소유자가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되어있고, 건축물석면지도의 경우에는 모든 건축물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건축물인 경우에만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와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건축물석면지도의 경우 언제나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와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번역가는 사례 8에서 사용된 첫 번째 ‘및’을 ‘or’로 번역하였다. 두 번째로 ‘건축물관계자 및 건축물 양수인’에 사용된 ‘및’의 경우, 해석을 위해 참조한 제22조제1항에서도 동일한 ‘및’이 사용되어 정확한 의미를 해석하기 어렵다. ‘건축물관계자 및 건축물 양수인’은 제22조제1항과 사례 8의 경우에만 사용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된 ‘및’의 의미를 다른 조문의 맥락을 통해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코텍스트 차원의 맥락상 단서가 별도로 주어지지 않는 경우, 번역가는 해당 법령어를 사전적 의미에 따라 번역하거나, 번역가 개인의 상식에 따라 번역하거나, 좀 더 정확한 의미의 해석을 위해 관련법(사례 8의 경우에는 건축법)을 참조하거나, 해당 법제관에게 직접 문의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게 된다. 그러나 해당 법문을 작성한 법제관에게 직접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방법이든 잘못된 해석을 낳을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는 게 사실이다⁹⁾. 특히 ‘및’처럼 사전뿐만 아니라 국회법제실이나 법제처에서

9) 자르체비치(1997: 151-152)는 법률텍스트에 사용된 접속사 번역의 중요성을 논하면서, 해당 조건들이 누적적으로(cumulatively) 적용되는 ‘and’와 대체적으로(alternatively) 적용되는 ‘or’를 잘못 번역하는 경우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따라서 번역가는 촉박한 법제과정 등으로 인해 논리적으로 잘못 사용된 접속

발간한 자료에서도 그 의미를 ‘and’로만 정의해 놓은 경우, 애매한 법령어의 유형 및 관습화된 표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는 번역가들은 ‘및’이 많은 법문에서 실제 ‘or’의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의 법학계가 ‘법률용어’와 ‘법률언어’ 중에서 구체적인 법률 용어의 해석 및 번역에만 관심을 기울여 왔을 뿐, ‘법률언어’가 실제로 사용되는 양상과 이에 대한 번역문제에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사례 8 역시 번역가가 ‘및’의 의미를 정확히 해석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사례 8)

① 석면해체·제거작업 및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석면해체·제거작업 개시 전까지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이하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1) The project owner of a project for dismantling or removing asbestos or a construction project that requires works dismantling or removing asbestos (hereinafter referred to as “project owner”) shall designate a supervisor of the works for dismantling or removing asbestos (hereinafter referred to as “supervisor of works for dismantling asbestos”) to ensure the safe management of works for dismantling or removing asbestos.

상기 조문 또한 ‘및’이 석면해체·제거작업과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 모두를 지칭하는 ‘and’의 의미로 사용된 것인지, 아니면 석면해체·제거작업과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 중 어느 하나를 뜻하는 것

사를 그대로 번역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원문이 애매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법제관에게 문의하여 이를 확인 및 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즉, 법제관과 번역가 간 협력을 통해 접속사 사용의 애매성과 이에 따른 오역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법제관과 번역가의 공동 법제(co-drafting) 관행이 정착된 캐나다 등 일부 이중 언어 국가의 경우 이러한 협력이 유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나, 한국의 경우 현실적으로 이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본고의 논의대상인 ‘등’, ‘및’, 가운데점의 경우 하나의 법령 안에 수백 개씩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법제관에게 일일이 문의하기도 쉽지 않다.

인지를 번역가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제가 달리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조문이나 관련법을 통해 간접해석이 가능한 경우도 아니기 때문에, 번역가는 일반적 상식에 근거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과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 모두를 함께 발주하는 발주자보다 석면해체·제거작업과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를 별도로 발주하거나 이 중 하나만을 발주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및’을 ‘or’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역시 해당 법제관에게 직접 문의하는 방법 외에는 번역가의 해석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별도의 판단방법이 존재하지 않아 향후 번역의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3.4. 가운뎃점(·)의 문제

가운뎃점 역시 ‘및’과 마찬가지로 중의성으로 인한 해석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빈번하다.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1999)은 가운뎃점(·)을 “섭표의 하나로, 열거된 여러 단위가 대등하거나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나타낼 때 쓴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만으로는 가운뎃점의 의미가 ‘and’에 한정되어 있는지 ‘or’까지 포괄하는 것인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실제로 대한민국 법령에서 사용되는 가운뎃점은 ‘and’와 ‘or’의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으며, 이는 2011년 국회 법제실에서 발간한 『법제실무』와 법제처에서 발간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서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2011년 국회 법제실에서 발간한 『법제실무』에 규정된 중간점(·)의 사용 기준:

1) 중간점(·)

① ‘단어’를 열거할 때에는 중간점을 쓴다.

예)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② 특정한 의미를 가지는 날을 나타내는 숫자에는 중간점을 쓴다.

예) 3·1운동, 6·25전쟁

③ 유사한 의미를 가진 단어는 ‘및’이나 ‘또는’으로 연결하지 아니하고 중간점을 써서 연결한다.

예) 총괄·조정, 조사·연구, 지도·감독, 심사·분석, 조정·협외, 관리

·운영, 종합·조정

- ④ 업무상의 선후관계 등 연관성을 갖는 단어는 ‘및’이나 ‘또는’으로 연결하지 아니하고 중간점을 써서 연결한다.
예) 수립·시행, 기획·입안, 수집·분석, 입안·운영

또한 법제처에서 발간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 제 3판(p.92)에는 가운데점(·)의 사용기준을 규정하면서 그 예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의 경우 가운데점의 의미가 모호하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로 하거나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렇게 한국의 법문에서 가운데점은 ‘and’의 의미와 ‘or’의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으며, ‘및’의 경우와 달리 법제처를 비롯한 법조계에서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해석상의 모호함을 줄이기 위해 법문에서 이를 가급적 구분하여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가운데점의 해석을 둘러싼 논쟁은 법조계에서도 통일된 의견을 내놓고 있지 못할 만큼 그 범위와 양상이 폭넓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석은 때로 대법원까지 올라가서야 종결될 정도로 엄밀한 법조계의 전문영역에 해당한다¹⁰⁾. 그러나 법문에서 무수히 등장하는 가운데점을 어

10) 가운데점 해석에 관한 어려움을 보여주는 사례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명·날인을 “서명 및 날인”으로 볼 것인지, ‘서명 또는 날인’으로 볼 것인지에 관한 법조계의 논쟁을 들 수 있다. 이에 관한 소송에서 1심 법원은 ‘서명·날인’의 의미를 ‘서명 또는 날인’의 의미로 해석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08.3.12. 선고 2007구합32655 판결), 2심은 1심과 달리 ‘서명·날인’의 의미를 ‘서명 및 날인’, 즉 ‘서명과 날인’의 의미로 해석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08.8.26. 선고 2008누9005 판결), 대법원은 ‘서명·날인’의 의미를 ‘서명 및 날인’의 의미로 해석함으로써 2심 판결의 손을 들어주었다(대법원 2009.2.12. 선고 2008두16698 판결).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대법원이 ‘서명·날인’의 의미를 ‘서명 및 날인’으로 해석하였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있어서 ‘서명 및 날인’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2심의 해석 논거를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 있지만, 법률의 제정목적, 입법취지, 다른 조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서 얼마든지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이 있고 난 뒤에, 2009. 4. 1. 국회에서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종전에 ‘서명·날인’으로 표현되어 있던 것을 ‘서명 및 날인’으로 바꿈으로써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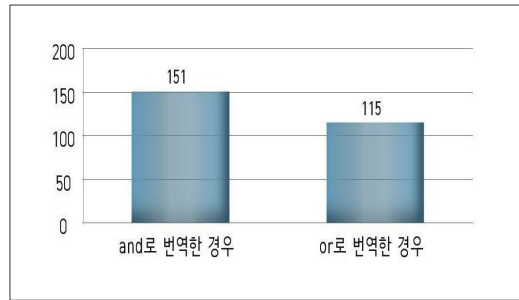
(<http://webzine.seoulbar.or.kr/include/printPage.asp?yymm=201012&articleclascd=A11800&articleseq=1>)

떻게든 해석을 하지 않으면 번역결과물을 내놓을 수 없는 번역가의 입장에서는 번역가의 영역을 벗어난 일임을 잘 알면서도 해석을 해야만 하는 딜레마에 놓이게 된다. 최근 법제처의 법령정비노력에 힘입어 이러한 해석상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맥락상의 단서가 등장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3.4.1 사례분석

이와 같은 가운데점의 중의성을 번역가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그림 3>은 분석대상인 석면안전관리법 영문번역텍스트에서 ‘가운데점’이 ‘and’로 번역된 경우와 ‘or’로 번역된 경우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¹¹⁾. ‘and’로 번역된 사례가 좀 더 많기는 하지만 ‘or’로 번역된 경우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법에서 가운데점의 의미가 ‘and’와 ‘or’ 양쪽으로 거의 균등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3> 석면안전관리법 영문번역텍스트에서 가운데점의 번역 양상



사례 9는 가운데점이 ‘or’로 번역된 경우로, 법제관이 가운데점을 ‘or’로 해석해

11) 한 구문에 가운데점이 여러 개 들어가더라도 번역할 때는 가운데점 하나하나를 일일이 ‘and’ 또는 ‘or’로 번역하지 않고 통상 마지막 가운데점만 번역하기 때문에, 가운데점 번역에서 ‘and’로 번역한 경우의 수와 ‘or’로 번역한 경우의 수는 가운데점으로 연결된 구문의 마지막 가운데점의 번역 수를 기준으로 통계화하였다.

야 함을 암시하는 맥락상의 단서를 분명하게 제시하여 해석상의 모호함을 줄인 경우이다.

(사례 9)

제26조(슬레이트 처리에 관한 특례)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사용된 슬레이트를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하려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할 수 있다.

Article 26 (Special Cases in Disposal of Asbestos Slates)

A person who intends to dismantle, remove, collect, transport, store, or dispose of asbestos slates used in a structure under Article 25 (1) may dismantle, remove, collect, transport, store, or dispose of them,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notwithstanding Articles 28-2 and 38-3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nd Article 13 of the Wastes Control Act.

위의 사례에서 법제관은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처리’로 범문을 작성하는 대신, 가운데점과 함께 ‘또는’이라는 단어를 병기함으로써 가운데점이 ‘or’의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이런 경우 번역가는 가운데점의 해석문제를 두고 고민할 필요 없이 번역과정에만 집중할 수 있다. 법제과정에서 애매한 법령어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는 일이, 오역을 줄이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명확한 맥락상의 단서가 의도적으로 제공되는 경우는 아직까지 많지 않다.

(사례 10)

② 석면해체·제거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A business entity engaged in dismantling or removing asbestos shall measure the degree of scattered asbestos,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shall submit a report on the results thereof to the competent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the head of the competent Si/Gun/Gu; Provided, That the foregoing shall not apply to case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small buildings.

사례 10에서 번역가는 '석면해체·제거업자'에 사용된 가운데짐을 'or'로 해석하여 번역하였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가운데짐 역시 'or'로 번역하였다. 첫 번째 가운데짐의 경우 '석면해체·제거'가 앞의 조문(제27조)에서 아래와 같이 이미 'or'의 의미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맥락상의 단서에 힘입어 비교적 정확한 해석이 가능하다.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라 건축물이나 설비로부터 석면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이하 “석면해체·제거작업”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그러나 두 번째 가운데짐의 경우는 해석을 위한 맥락상의 단서가 분명하지 않아,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다층적인 해석 기제를 동원해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시·도지사”로 정의한 바 있지만 '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 따로 정의되지 않고 제11조제3항부터 바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석면안전관리법의 조문 자체만으로는 이를 'and'의 의미로 해석할지 'or'의 의미로 해석할지가 불분명하다. 이를 정확히 해석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법령어 사용 맥락상 따로 정의가 없어도 '시·도지사'에서의 시장은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을 말하는 것이고 '시장·군수·구청장'에서의 시장은 각 도에 속한 시의 시장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기본 지식이 있어야 하며, 아울러 건축법 등 관련 법¹²⁾에서 다른

12) 건축법(제11182호)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적합하여야 하고, 3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법제관이 동일 내용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명기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한국의 법령어 사용에 대한 기본 지식과 함께 관습화된 가운데점의 사용관습에 대한 충분한 인지와 경험을 갖추고 있어야 이를 올바르게 해석해 번역할 수 있는 것이다.

4. 결론

본고에서는 애매한 법령어에 대한 번역가의 해석문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석면안전관리법에 나타난 ‘등’, ‘및’, 가운데점(·)의 번역 문제를 살펴본다. 분석결과 ‘등’, ‘및’, 가운데점(·)의 번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등’의 번역에서 ‘etc.’ 외에 ‘such as’나 ‘including’이 사용되는 것은 ‘etc.’를 사용할 경우 영어의 언어사용규범에 비추어 어색한 문장이 되는 현상을 피하기 위한 교육지책에서 나온 결과로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한국의 법체계에서 주로 예시가 아닌 축약을 위해 사용되는 ‘등’에 대해 잘못된 해석을 유도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또한 분석 자료의 경우처럼 ‘등’을 번역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생략하는 경우는 법조문의 규율대상을 번역가가 자의적으로 한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및’의 경우에는 국회법제실이나 법제처에서도 ‘와/과’의 의미 외에 ‘또는’의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해 많은 번역가들 역시 ‘및’이 ‘or’로 번역되어야 할 경우에 대한 주의 없이 번역에 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번역가가 이를 인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텍스트 문맥상의 해석기제가 충분하지 않거나 모호한 경우가 많아 번역가가 이를 정확히 해석하기 쉽지 않다.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모호문을 피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법제지침을 고려할 때, ‘또는’의 의미로 ‘및’을 사용하는 현재의 법제관행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및’은 일상적인 한국어의 사용례에 부합하도록 ‘와/과’의 의미에 한정하여 사용하고, ‘또는’의 의미로 사용할 때는 ‘및’을 사용하지 말고 ‘또는’,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혹은’ ‘~거나’ 등을 사용한다면 불필요한 해석의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운데맺점 번역의 경우 그 해석 례에 대한 법원의 판례가 나와 있을 정도로 법조계에서도 관련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법제지침에도 수 개의 가운데맺점으로 연결될 경우 ‘및’이나 ‘또는’을 삽입하여 그 의미를 분명히 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등’이나 ‘및’에 비해 해석의 모호함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가시화된 경우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법제지침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번역과정에서 번역가가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는 맥락상의 단서 또한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불필요한 가운데맺점의 사용으로 인해 오히려 의미의 왜곡과 용어이해의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도 나오고 있는 만큼(강현철 2003: 58), 무분별한 가운데맺점의 사용을 지양하고 ‘및’이나 ‘또는’으로 대체하여도 무리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하여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한다면 번역가의 해석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개별 번역가가 애매한 법령어의 해석 양상을 숙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하더라도, 해석의 절차와 사례를 유형화할 수 없을 정도로 이들이 자의적으로 사용된다면 오역의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하기 마련이다. 국회법제실과 법제처에서 현재 가운데맺점의 해석문제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으며 법령정비기준을 마련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법제과정에서 ‘등’과 ‘및’을 포함한 애매한 법령어의 사용문제에 앞으로 보다 주의를 기울일 것을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강현철 (2003) 『법령용어의 순화와 정비에 관한 법 언어학적 연구』, 서울: 한국 법제연구원.
- 권오봉, 권혁재, 김동호, 윤태석 (2009) 『법문서 작성』, 서울: 법문사.
- 국회 법제실 (2011) 『법제실무』, 서울: 국회 법제실.
- 김광해 (2000) 「우리나라 판결문의 텍스트성에 대한 연구」, 『텍스트언어학』 8: 271-97.
- 김남진 (200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의 재조명」, 『월간 자치행정』 214:

28-33.

- 김문오 (2001) 『법조문의 문장 실태 조사』, 서울: 국립국어연구원.
- (2002) 『법령문의 국어학적 검토: 법무부 검토 의뢰 법령을 중심으로』, 서울: 국립국어연구원.
- 법제처 (2009)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제3판, 서울: 법제처.
- 장소원 (2009) 「법률 텍스트 문장의 문법성」, 『텍스트언어학』 27: 1-29.
- 주진국 (2009) 「언어 형태와 번역의 기능성: 법률 서식 한영번역의 예」, 『번역학연구』 10(2): 247-73.
- 한국법제연구원 (2002) 『법령용어 및 문장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 Caliendo, Giuditta (2007) 'Intercultural Traits in Legal Translation', In Ahmad, Khurshid & Rogers, Margaret (eds.), *Evidence-Based LSP Translation, Text and Terminology Series*. Bern: Peter Lang, 296-301.
- Cao, Deborah (2007) *Translating Law*, Clevedon/Buffalo/Toronto: Multilingual Matters.
- Endicott, Timothy (2000) *Vagueness in law*, Oxford: Oxford UP.
- Engberg, Jan (2002) 'Legal Meaning Assumptions – What are the Consequences for Legal Interpretation and Legal Transl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Semiotics of Law* 15 (4): 375-88.
- Hjort-Pedersen, Mett & Faber, Dorrit (2001) 'Lexical Ambiguity and Legal Translation: a Discussion', *Multilingua* 20 (4): 379-92.
- Sainsbury, Richard M. (1995) *Paradoxes*, New York: Cambridge UP.
- Šarčević, Susan (1997) *New Approach to Legal Translation*, The Hague: Kluwer Law International.
- Varó, Enrique Alcaraz, & Hughes, Brian (2002) *Legal Translation Explained*. Manchester: St. Jerome.

[Abstract]

**Ambiguity in Legislative Language and Translator's Interpretation
— *Deung*(etc.), *Muit*(and), and Centered Dot(·) in Korean Statutes —**

Yoo, Jeongju
(Ewha Womans University)

Legislative texts usually have ambiguous or vague formulations that might be the product of political compromises or legislator's neglect. Practicing lawyers and judges are professionally engaged in interpreting the legislator's intent, thus establishing the ambiguous or vague meaning of texts for application in courts. It is generally agreed that the translator has no authority to interpret uncertainties in legislative texts, since the translator is believed to have no ability to ascertain the intended meaning of the source text. However, in the actual translation process, the translator is often faced with cases that require interpretation of uncertainties in lexical and syntactic units of statutory texts. This is often the case with translators producing English translation of the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Korean legislators use more abbreviated expressions such as *deung*(etc.) than legislators working under the common law system, or everyday or nontechnical vocabulary the semantic range of which is different from that of its common usage, such as *muit* and centered dot(·). This legislative practice might increase the risks of misinterpretation or mistranslation by Korean legal translators. In order to reduce the unnecessary burden of interpretation that is imposed on translators, Korean legislative drafters should be more cautious in using ambiguous expressions obstructing translator's systematic understanding of texts.

▶ Key Words: *deung*(etc.), *muil*(and), centered dot(.), ambiguity, translator's interpretation

유정주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번역학전공 박사과정

jeongjuy@naver.com

관심분야: 법률번역, LSP번역, 코퍼스, 제도적 번역

논문투고일: 2012년 10월 27일

심사완료일: 2012년 11월 26일

게재확정일: 2012년 12월 14일